

「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4. 6. 4.
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4조제1항 중 “효율적인 중대재해”를 “중대재해”로, “위하여 5년마다”를 “위하여”로, “대응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”를 “대응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”로 함.
-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본계획”을 “제1항에 따른 계획”으로 함.
-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함.

「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효율적인 중대재해”를 “중대재해”로, “위하여 5년마다”를 “위하여”로, “대응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”를 “대응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본계획”을 “제1항에 따른 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계획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<u>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</u>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<u>대응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<u>기본계획</u>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③ <u>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4조(계획 수립·시행) ① ---- -- <u>중대재해</u> ----- ---- <u>위하여</u> ----- ----- <u>대응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</u> -----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계획</u>----- -----.</p> <p>1. ~ 5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구미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획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
3.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
4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,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

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·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)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·대응계획 수립과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중점관리대상) ①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·수단, 사업·사업장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·수단, 사업·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
2.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
3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
4.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·수단, 사업·사업장

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구미시가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시설·수단, 사업·사업장에 한정한다.

제8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·수단,

사업·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4조,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에 관한 컨설팅

2. 중대재해 예방·대응 관련 교육 및 홍보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,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협력체계의 구축)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기업,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0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

2.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